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20243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회의정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08	이주희의원	'26.01.23.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6.03.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 (2026.04.3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2218304	윤준병의원	'26.04.14.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 (2026.04.3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30.)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2026.04.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7.)
는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
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
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피해자에 대
하여 전문적인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
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에 대
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
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사선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 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u>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